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인사150-1681	(전화번호 615)	전결규정 시장	4조/한 시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82. 6.	[Handwritten signature]		
시행일자	82. 6.			
보존년한	영구			
보 조 기 관	부시장	0000026.5	현 법무 담당관 보임1 계장	별자료 보임2 계장
	내무국장	[Signature]		
	인사과장	82. 6. 5		
기안책임자	고과계장	예금계좌 420		

경 유 수 신 참 조	각안참조	발 신	통 제	검열 1982. 6.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 목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영구) 제정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제목 같은 건	
1.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81.4.20 개정, 81.6.1 시행) 및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대통령령 제10344호, 81.6.10)과 82.4.27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 시 인사규칙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 제도가 선설됨에 따라 각급 고충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할것이나.	
2. 설치기관의 실무 담당직원들의 사무최급 요령이 미숙하여 운영이 지연되고 있어 인사규칙 제98조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고충심사 업무(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최급요령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별첨과 같이 제정 시행로자 와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 근거	
° 국가 공무원법 제76조의2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4조

나. 고충심사 업무 취급 요령 요지

- 고충심사 관장 기관

— 명 청 : 고충심사위원회 (26개 기관)

— 관장기관 : 인사위원회

설치부서 : 본청 인사과, 구 총무과, 사업소 주무과

- 고충심사위원회 명칭 및 본장 사항 : 별첨

- 위원회 설치 :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임명으로 가름

- 위원회 운영 시행 : 고충심사 업무 취급요령 시달 즉시

시행

- 서식 제정 시달 :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및 중앙고충심사

위원회 운영 예규 (총무처 예규 제133호)

에 준함

다. 기타 행정 사항

- 위원회 직인 조각 : 26개 (기관별 조각) 위원회 청부 (○○위원회)

· 직인 규격등은 관인규정에 의함 (36mm)

- 서식 제정 시달 : 대장, 청구서 서식, 고충심사 접수통지

및 실사자료 제출요구, 청구서 처리전, 심사보고서, 심사조서,

결정문 표지 등

첨부 : 1.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규정(예

규) 1부

(제2안)

수신: 문화공보관

제목 시보 개재 의뢰

1. 서울특별시 고층심사(인사상담 및 고층처리) 위원회 운영 규정(서울
특별시 예규 제 호)를 법집과 같이 제정하였기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서울특별시 고층심사 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1부

(제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고층심사 위원회 운영 및 사무취급요령(예규) 시달

1. 서울특별시 고층심사(인사상담 및 고층처리) 위원회 운영 규정을
서울특별시 예규 제 으로 제정 시행하니 각급 기관들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동 예규는 시보에 개재하였음을 통보하니 활용에 철저를 기할 것. 끝

수신처 : 서구 1-17, 종합건설본부, 지하철은행사업소, 공무원교육문화, 세종문화
회관,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기술시험연구소.

1175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 척티)위원회 온영(溫英) 위원

37

1. 제작 이유

- 가.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8조에 의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적인 사무취급 요령의 시달로 고충심사업무의 능률화 쟁 확보.

2. 주요 글자

- 가.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명칭 및 심사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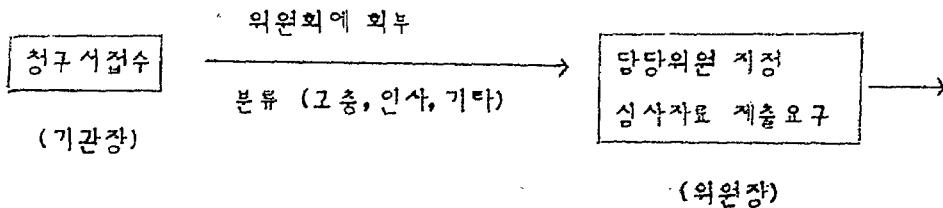
위 원 회 명 칭	기능	심 사 기 능	관 장
서울특별시보통고충심사위원회	1심 의원회	6급 이하국가공무원 5급 이상지방공무원 (1심) 6급 이하지방공무원 (재심)	서울특별시인사 (보통징계)위원회
서울특별시고충심사위원회	1심 및 2심	5급 이상지방공무원 (1심) 6급 이하지방공무원 (재심)	서울특별시인사 위원회
본청고충심사위원회	1심	본청, 서립대학, 농촌지도소, 국산 학사업소의 6급 이하지방공무원	본청고충심사 위원회
구 고충심사위원회	1심	구 소속 5급 이하지방공무원	구 인자위원회
사업소고충심사위원회	1심	6개직할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사업소고충심사 위원회 또는 인사 위원회

나. 위원회의 의원과 직원의 심사자세

1. 공무원의 권리 보장과 국가방전지원

2. 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昂양 및 고충심사 비밀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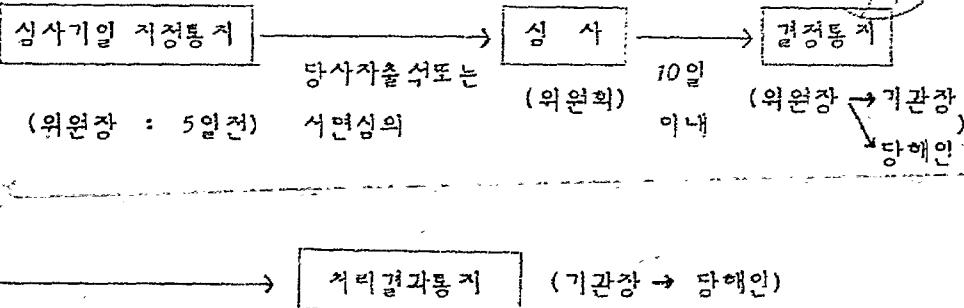
다. 사무 취급요령 세분화 및 서식식탁



1. 고충 심사사항 : 자료심사, 사실조회, 면담
2. 인사상담사항 : 면담 (청구인 소환)
3. 안내사항 : 인사상담에 준함

심사보고서 작성회부
(의원 → 위원회)

(담당의원)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일자	1982. 6. 2.	제	5호
금강자	방세계장	임무집장	

1982. 6.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1971호, 1982. 4. 27)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위원회 및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설치 기관장과 위원회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및 심사기능) 위원회의 명칭, 심사기능 및 관장기구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 명칭	심사 대상 및 기능	관장기구
서울특별시 보통고충심사 위원회	6급 이하 국가공무원 및 기능직(1심)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고충심사 위원회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1심) 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재심)	"

본 청 고 총 심 사 위원회	본 청, 시·읍 대학, 농촌 지도소, 국 산하 사업소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심)	본 청 고 총 실사 위원회
0 0 구 고 총 심 사 위원회	구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심)	구 인사위원회
종합건설본부 고 총 심 사 위원회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1심)	종합건설본부 인사위원회
지하철은행사업소 고 총 심 사 위원회	"	지하철은행사업소 인사위원회
금무원고육원 고 총 심 사 위원회	"	금무원고육원 고 총 심사위원회
세종문화회관 고 총 심 사 위원회	"	세종문화회관 고 총 심사위원회
지하철건설본부 고 총 심 사 위원회	"	지하철건설본부 고 총 심사위원회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고 총 심 사 위원회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고 총 심사위원회

제4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아니 임명하고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임명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직원은 간사 및 서기로 하되 서울특별시 보통고총 실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과장은 간사로 하고, 그 과제장을 서기로 하며,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사무 담당책장을 간사로, 담당직원을 서기로 한다.

제5조(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균무의욕과 사기를 양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절차 및 사무처급요령) 고충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한부록~~ 사무처급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서 제출 :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별표1호 서식)2통을 작성 제출한다.
2. 청구서의 접수처리 : 위원회설치 기관장은 청구서 접수 즉시 당해 고충심사위원회 관장부서에 서수 ~~접수~~에 의거 이송하여야 하며, 사무직원은 고충심사처리 대장(별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청구서 처리전(별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을 지정함과 동시에 고충심사 청구, 접수 통지 및 실사관계자료 제출요구서(별표4호 서식)에 의뢰하여 청구서 1통을 첨부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청구 관계 자료처리 : 사무직원은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가 제출되면 청구서, 실사자료와 함께 청구관계자료 처리전(별표5호 서식)을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담당의원의 사실조사 및 허위의견 작성제출 : 담당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한문~~을 하거나 관계기관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담당의원은 사실조사가 끝난 후 심사보고서(별표6 호식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5. 심사기일 지정통지 : 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를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때에는 고충심사기일지정 통지서(별표7 호식식)를 심사일 5일전까지 청구인과 해당기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심사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고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아할 수 있다.

제8조(의원회의)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저례회의와 이사회로 구분 하되 위원장이 ~~설정하는~~ ~~일정에~~ ~~월회 개최하고~~ 정례회의는 각급 위원회 ~~별로~~ ~~월1회 이상 개최(심사 대상이 수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적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사무직원 ~~근무~~, ~~직무~~ 청구당사자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사무직원은 ~~증자료서(별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참석한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하는 심사조서는 회의록으로 가름 할 수 있다.

제9조(결정)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당사자가 퇴장한 후 1. 인용(시정 요청) 2. 기각, 3. 각 ~~의원~~은 결정 ~~하여~~ 소정절차를 준수한 후

② 담당의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문 안(별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정문의 송부)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의원의 서명을 ~~기록한~~^{기록한 후 10일 이내에} 밟은 후 원본에 의기 정본~~을~~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제11조(고충 처리현황보고) 위원회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은 월별, 분기별로 고충 처리 현황(별표 제10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기관별 고충 심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장 및 서울특별시장(인사과장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확인) ① 각급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고충심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한 각급 기관장은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인사국 합동)의 인사감사 및 서울특별시의 인사 업무지도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 보관) 기록은 관리직원이 간단하여 정리하고 공문서보관, 보존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1)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서

= =

1. 고충심사청구번호 :

2. 청구인 : 성명 :

소속 :

생년월일 :

직업 :

주소 :

3. 임용관자(재심 청구시 기재)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9 년 월 일

청구인

(인)

0 0 0 0 장 (의원회 설치 기관장) 과 학

1193

(별 표 2)

고 층 심 사 처 리 대 장

=====
=====
=====

접수일자	청구번호	청 구 목 이				이용권 제공 여부	제 작 권 자 는 부 분 자	청구의 요지	사건배정		심사결정		결정통지일자	처리확인	비 고
		성	명	소	속				배정일자	담당의원	결정일자	결정종류			

* * * 접수일자는 당해기관장이 접수한 날짜로 함.

1186

(별표 3)

성 구 서 척 비 전

=====

서 기	간 사	위원장

사건		담당의원		
성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구	소 속			
인	주 소			
임용관자 (관계기관의장)				

성 구 요 지

지 침

(별 표 4)

0 0 0 0 고충심사 위원회

.....

성구 번호

198

수식

차조

제작 고충실사 친구 접수동지 및 실사과제자료 제출요구

198 괴 소속

여 그 무 학는

(๑๖) ถ

(যোগ)

부 터 별첨과 같은 고충 심사 청구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국 가 ~~기록~~ (진행) 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제67조의2제4항) 및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7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7조)에 의하여 심사에 필요한 아래 기재자료를 요구하니 198 . . . 까지 기일을 수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 이유 강하에 대한 학문 벽 벼며시 미그 이즈 과제자료

◦ 서 설 (예)

성 구 이 유	법 명 사 유	입 증 관 계 자 료

2. 기타 보건 소명에 표시한 관계인구 및 자료

위 청구관계자료는 반드시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각 청구관계서류 사본에는 작성자가 판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00000 고충실사 익원회의 역할

전부 글 모서 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2 -

(별 표 5)

청구 관계자로 서의 전

=====

	시기	간사	담당위원
사건			
담당위원			

청구 취지

<u>법령요지</u>	<u>입증관계자료</u>
	

심사보고서

담당위원		결재	담당위원	위원장
		자		

사전 8- -

첨구의 건

성명		직급		생년월일
소속				
주소				
임용권자 (관계기관)				
청구취지				
접수일자		처리기한		
비	1. 심사당일 확인사항 2. 결정의견(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하되 의견서술)			

0 0 0 0 0 고 층 심 사 의 원 회

사건 8-

()

19 . . .

수신

제목 고 층 심사기일통지

19 년 월 일자로 괴하(괴소속)가 청구한 고 층 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 고 층 치티규정 제8조(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9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기일전에 단 의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송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일 : 19 . . .

◦ 출석장소 :



1159

(별 표 8)

심사조서

사건 8 -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일시 198	장소		심사회의실
의원장 :			
의원 :			(인)
회관제작원 :			
출석당사자	청구인 :		
	피청구인 :		(인)
의원장은 8 -		고충심사에 대한 심사	
회의의 개최를 선언하다			
은 고충심사 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정 설문을 실시하여 당사자			
작업을 확인하다			
의원장은 고충심사 당사자들에 대하여 기피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는 저의			
여부에 관하여 물어본 바,			
은 청구의 취지와 청구 이유 오지를 낭독하고 청구인에게 제			
출한 청구서 내용과의 상위유무를 확인한 바,			

100

(별 표 9)

결정

사건유 - 청구

청구인 : 성명 ()

소속 직급

주소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19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은 ~~의견~~

* * 다음에는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순으로 작성

(별 표 10)

고 층 심 사 치 러 현 황

=====

19 . . . 현재

1. 접수 : 건

◦ 이월 :

◦ 일반청구 :

◦ 재심청구 :

2. 처리 : 건

구 분	제	일반청구	재심청구
계			
◦ 시정요구			
◦ 기 과			
◦ 과 하			
◦ 취 하			
◦ 재심인용			
◦ 정책반영			

3. 진행 : 건 (일반청구)

‘건, 재심청구’

현

◦ 금월중 심사예정

◦ 익월 심사예정

◦ 조사중